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가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 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4조제4항 신설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